안전점검의 역할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글 | 유희동 협회 연구컨설팅부장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3년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회의 안전점검의 역할과 위험개선 점검사항, 그리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아본다.

1. 머리말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는 1973년 특별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거, 설립되어 현재까지 33년간 특수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방재전문기관이다. 화재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 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협회 운영 재원 중 일부인 방재활동협회비는 10개 손해보험회사(이하 '원수사'라 한다)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즉, 화보협회는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에 대해서 매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원수사에는 보험계약에 필요한 자료(특수건물할인율, 소화설비할인율 등 포함)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안점점검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까지 안전점검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인 위험개선권고사항을 어떻게 개선토록 유도하는지를 논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안전점검의 절차

'화재보험법'에서 규정된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관서에 건의하여 방화시설의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각 원수사에는 보험인수 및 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는 점검결과 위험개선권고사항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시 특수건물할인과 소화설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방재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도 한다.(도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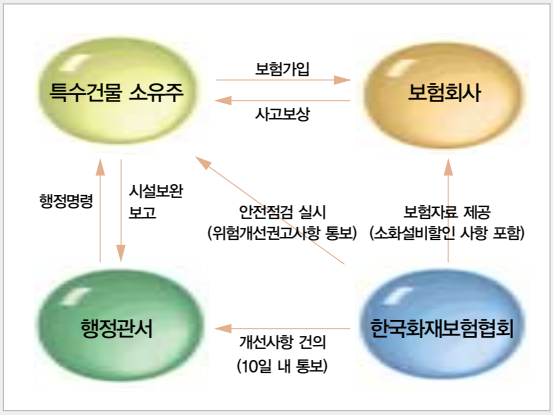

■ 도표 1. 안전점검의 절차

3. 안전점검의 역할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연각호텔 화재, 대왕코너 화재, 윤성방직 화재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제에도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화재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화보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매년 약 20,000여 건의 특수건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보협회의 안전점검은 건축분야(방화구획, 피난시설), 화공분야(화기, 위험물, 가스시설, 공정시설의 발화위험), 전기분야(전기시설의 발화위험, 경보설비), 기계분야(소방시설, 제연설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점검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 관련 자료(각종 할인 포함)도 동시에 파악하여 원수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점검기관과의 차이점이다.

가. 사업장(건물) 측면

방재분야에 대해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시기에 설립된 화보협회는 30년 이상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재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인 위험개선권고사항을 소유주에게 제시하거나 행정관서에 개선 건의를 하여 보완토록 함으로써 사업장 안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특수건물에 대한 방화시설 양호율이 1973년 화보협회 설립 당시 25% 수준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70%를 상회하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사업장에는 안전점검 결과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거나 위험개선권고사항을 개선할 경우 보험계약시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도 저하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다 생산(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협회는 그 동안의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 소유주, 사업장 CEO, 관리자 등에게 안전에 대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곧 사업장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 〈표 1〉 최근 특수건물 방화시설 양호율

년 도	2001	2002	2003	2004
양호율(%)	70.4	72.3	73.9	76.2

나. 보험사 측면

국내 보험시장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요율경쟁이 치열해져 신규계약을 유치하거나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보험료 할인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화보협회에서는 안전점검을 통해 파

악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험요율코드와 각종 할인율을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서 과당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방재시설의 점검뿐만 아니라 원수사에 리스크 개요(일반사항 포함), 건물현황, 할인율(특건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 화재위험도평가, 총괄표 등 언더라이팅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이들 중 일부는 화보협회 메인 서버에 자료를 올려놓아 수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적용대상에 대한 목록 및 할인율을 별도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보협회에서는 원수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서베이(Risk Survey)를 실시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 보험인수 또는 보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발화위험을 제거하고 방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율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요율 인하로 특수건물 사업장에게도 이익이 되고 있다.

다. 제도적 측면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 개선 건의함으로써 방재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하는 '안전점검 결과분석' 을 통하여 나타나는 제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건의하여 국가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4. 방화시설의 개선

가. 자발적 개선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직접피해보다 인건비, 이익감소 등 간접손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직접손실보다 간접손실이 약 4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기업에 미치는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건물 소유주, CEO, 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높아지고 있다.

화보협회에서는 국내의 소방관련 법규, 건축법규, 가스3법, 전기관련 법규 등과 외국의 NFPA Code, FM Loss Prevention Data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점검 결과 위험개선 권고사항을 건물 소유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안전의식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우선적으로 시설을 개수하고 있다. 2004회계연도에는 안전점검 물건 중 90% 이상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에게 개선을 건의하였다.

나. 강제적 개선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위험개선 권고사항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구청 등 행정관서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개선 건의를 받은 행정관서는 필요시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건물 소유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완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보험요율 할인에 의한 개선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이 있다. 이러한 할인은 화보협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결

정되어 지는데 안전점검 결과 위험개선권고사항을 보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안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방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점검결과 위험개선권고사항이 개수되어 화재발생위험 요인이 제거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물 소유주는 위험개선권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건물 소유주의 시설 보완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위험이 감소하거나 사고시 지급보험금이 줄어 결국 보험회사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문화 정착

생산보다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생산을 안전보다 먼저 생각하고, 건물 소유주는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약의 사고시 100% 보상을 받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으로는 재물손실을 완전하게 복구하는 데 미흡할 수도 있으며 간접손실, 기업 이미지 저하 등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및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건물 소유주 및 사업장의 CEO, 관리자들에게 생산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험에 의한 안전관리

안전점검업무는 보험에 의해 관리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협회는 안전점검 결과 권고사항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나 반복적인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강제로 개선토록 행정관서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강제 개선유도 방법은 안전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한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점검 결과가 보험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현재는 특수건물할인, 소화설비할인, 우량할인 등이 안전점검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할인율은 상호 중복되는 항목이 있고 할인 종류가 너무 많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점검 결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 · 할증율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안전점검 항목 확대

화보협회가 설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화재 및 폭발이었으나, 지금은 화재 · 폭발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다른 위험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화보협회의 안전점검도 이에 따라 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안전점검 항목은 화재 및 폭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자연재해, 붕괴위험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태풍, 홍수, 지진, 붕괴, 환경오염 등의 재난 관련 사항과 특종보험 관련된 사항 등이 좀더 자세하게 포함되도록 점검항목의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언더라이팅 서베이 기법 강화

안전점검은 기능 특성상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점검이 되어야 한다. 안전점검은 보험회사와 소유주가 필요로 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고 보험회사도 그 점검결과에 의해 영업이 이루어져야 안전점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안전점검 결과의 보험활용은 우리 실정에 맞는 위험도를 개발하고 정량화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서베이 기법의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마. 정책의 전환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초고층 건축물, 다양한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집적되고 복잡화되는 대형건축물, 인천신공항 등 특수한 초대형 건축물 등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건축물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규가 건축법, 소방법 등 사양중심(Prescriptive Based) 체계로 되어 있어 적용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1990년도 중반 이후에 성능 위주(Performance Based)의 소방설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특별히 안전이 필요한 건축물은 방재적 특성(공간형태, 이용형태, 화재속성 등)을 고려한 위험도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906호)' 이 2006년 3월 24일 공포되어 1년 후인 2007년부터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50,000㎡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100m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2006년도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화보협회에서도 2000년도 초부터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적용하여 안전점검 결과에도 반영하고 있다.

6. 맺음말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 즉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에는 규제에 의한 안전보다는 보험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따라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협회의 안전점검도 변화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발전방향은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언더라이팅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언더라이팅 서베이 기법의 기술발전 축적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